

무역 및 관세 뉴스

유럽연합(EU)- 베트남 자유무역협정 – EVFTA

2020년 06월 09일



무역 및 관세 뉴스

유럽연합(EU)과 베트남간
자유무역협정 – EVFTA

2020년 06월 09일



목차

	페이지
• EVFTA 의 진행상황	03
• 관세 완화 개요	04
• 상품 분류별 관세 완화 일정표	05
• 원산지 규정 시행 규칙 초안	07
• EVFTA에 따른 기타 약정	08
• 딜로이트 베트남의 권고사항	09
• 딜로이트 베트남의 지원	11

무역 및 관세 뉴스

유럽연합(EU)과 베트남간 자유무역협정 – EVFTA

2020년 06월 09일



EVFTA 진행상황

2020, 2월 12일



유럽의회는 유럽연합
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 – EVFTA
를 비준

2020, 3월 30일



유럽이사회는 EVFTA를
비준

2020, 6월 8일



베트남 국회는 EVFTA
적용을 공식 승인

2020, 6월



베트남이 EU측에 EVFTA 의
적용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 베트남 정부는 EVFTA
협정 수행을 위해 상품무역
또는 관세 경감 일정(예, EVFTA
관세표에 관한 시행령 발행) 및
원산지 규정 ("ROO") (산업
통상부의 EVFTA에 따른 ROO에
관한 시행 규칙)등을 법제화

2020, 8월 1일



EVFTA 발효 예정

무역 및 관세 뉴스

유럽연합(EU)과 베트남간 자유무역협정 – EVFTA

2020년 06월 09일



관세 완화 개요

수입

- EVFTA 발효 (1일) 즉시 **EU**는 관세 대상 품목의 **85.6%**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며, 이는 베트남의 대유럽 수출 물량의 **70.3%**에 해당한다;
- EVFTA 발효 7년 내에 **EU**는 관세 대상 품목 **99.2%**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며, 이는 베트남의 대유럽 수출 물량의 **99.7%**에 해당한다;
- EVFTA 가 발효되면 **베트남**은 즉시 관세 대상 품목의 **48.5%**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며, 이는 EU 의 대 베트남 수출 물량의 **64.5%**에 해당한다;
- EVFTA 발효 10년 내에 **베트남**은 관세 대상 품목의 **98.3%**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며, 이는 EU의 대 베트남 수출 물량의 **99.8%**에 해당한다.
- **베트남**은 이외 관세 대상 품목에 대해 10년 동안 관세할당을 통해 EU에 혜택을 제공한다.



수출

- EU는 베트남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 베트남은 아래 특정 보호 제품을 제외하고 EU에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15년 동안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i) 발효일로 부터 5년 또는 6년 이후 20% 로 수출세가 감면되는 실리콘 모래, 아연 광석, 납 등 (ii) 원유, 석탄 등 기본 관세 적용 물품.

상품 분류별 관세 완화 일정표 EU 관세 완화 일정표

EU는 8년 에 걸쳐 수입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 “민감”상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관세 할당 협약에 따른다;
- 섬유,의류와 같은 여러 “생산 업종”의 경우 관세감면은 시차를 두고 실행된다. 일부의 경우 EVFTA 발효 후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반면, 일부는 4년후 그리고 나머지는 6년 ~8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 EU 관세 철폐 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관세 감면 혜택 시점을 결정하는 핵심은 EU에서 사용하는 HS분류 코드에 따른다.

무역 및 관세 뉴스

유럽연합(EU)과 베트남간 자유무역협정 – EVFTA

2020년 06월 09일



판매 등 상업 목적이 아닌 참조 목적으로 만 상용가능



상품 분류별 관세 완화 일정표 베트남 관세 완화 일정표

무역 및 관세 뉴스

유럽연합(EU)과 베트남간 자유무역협정 – EV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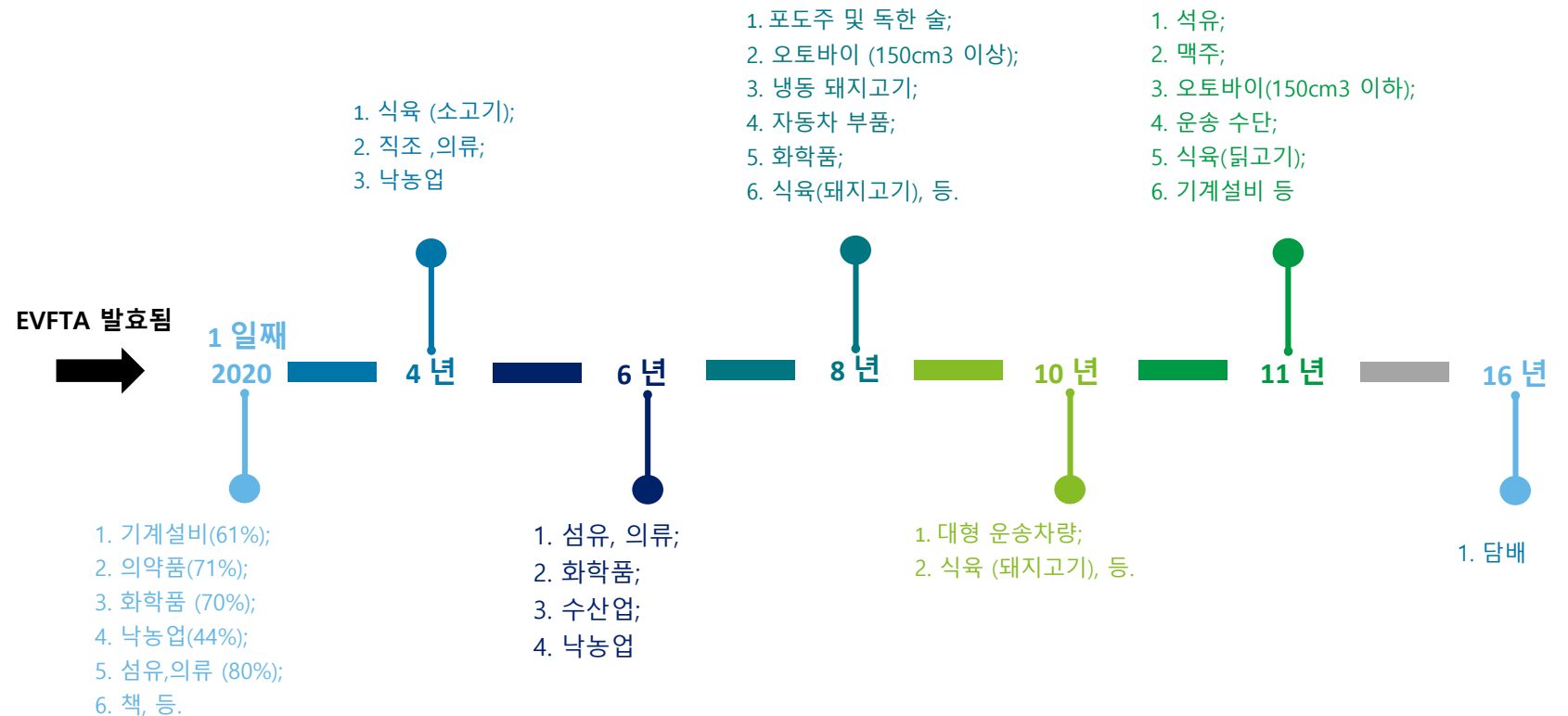
2020년 06월 09일



판매 등 상업 목적이 아닌 참조 목적으로 만 상용가능

수입관세는 **16년** 에 걸쳐 철폐될 예정이다;

- 섬유,의류와 같은 여러 “생산 업종”의 경우 관세감면은 시차를 두고 실행된다. EVFTA 발효 후 일부 상품은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일부 상품은 4년후 그리고 나머지는 6년 ~16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 베트남 관세 철폐 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관세 감면 혜택 시점을 결정하는 핵심은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HS분류 코드에 따른다.





원산지 규정 시행 규칙 초안

산업통상부가 발행한 EVFTA하의 ROO의 적용에 관한 원산지 규정 시행 초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 규정	단순한 가공 및 제조	원산지 증명서 ("C/O") 자체 발급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 – (예. 싱가포르)을 원산지로 하는 자재는 "베트남 원산지 자재"로 간주된다-해당 자재는 제품의 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어야 하며, 베트남에서 가공. 제조 활동은 "단순한 제조.가공한 활동"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산 원단을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또는 제조하게 될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베트남 원산지 원단"으로 간주된다; 베트남에서의 가공.제조 활동이 "단순한 제조.가공 활동" 이상인 경우	초안은 제 31/2018/ND-CP 호 시행령 또는 ACFTA, CPTPP 등에 따른 ROO에 관한 시행규칙의 내용보다 더 엄격하고 상세하게 단순한 가공.제조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섬유/의류 및 농산물 등과 같은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초안은 특수 기계, 장비 또는 기타 전문 기술의 사용이 없는 경우를 단순한 가공 및 제조로 간주하여 기존보다 열린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C/O를 자체 발급하는 수출자는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C/O 자체 발급: 수출자는 전산을 통해 문서에 원산지 신고 내용을 인쇄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C/O를 자체 발급할 수 있다. 원산지 자체 발급 증명서는 수입국에 2년 이내 또는 수입국 국내 법령에 따른 기간내에 제출되는 경우 수출 이후 발급될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류(C/O 및 원산지 자체 발급 증명서)는 발급일부터 12개월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 수입국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무역 및 관세 뉴스

유럽연합(EU)과 베트남간 자유무역협정 – EVFTA

2020년 06월 09일



EVFTA에 따른 기타 약정

비관세 장벽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TBT")과 위생 및 검역 조치("SPS"): EVFTA 에 따라 베트남은 국제기준인 TBT 및 SPS 적용 을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EVFTA는 무역촉진을 위해 양 당사자간 라이선스, 관세절차 등 기타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한다.

서비스 무역 및 투자

EU의 베트남 투자자에 대한 혜택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약정에 따른것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최근 EU의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베트남의 EU에 대한 자율성 보장정도는 WTO에 따른것보다 더 높으며 베트남이 기존 무역 협정(예: CPTPP)에서 다른 파트너에게 적용하고 있는 최고 수준으로 ,주로 비즈니스 서비스, 환경, 은행, 보험 등과 같은 분야에 중점을 둔다.

지적 재산권

저작권, 특허권등에 있어 높은 수준의 보호를 약정

노동, 환경, 지속 가능한 발전

EVFTA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 규정과 규약을 실제로 적용하는 약정을 포함한다; 무역과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노동 및 환경법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는 목적; 기후 변화 및 환경보호, 생물 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관리,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한 약정 등을 포함한다.



딜로이트 베트남의 권고 사항

EVFTA의 기업 및 비즈니스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수출시 혜택

현재 EU는 수출액 기준으로 베트남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이지만,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상품의 시장점유율은 여전히 증가할 기회가 있다. EVFTA 일정에 따라 베트남 상품 99%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기업들은 더 많은 시장 참여와 시장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섬유 및 의류, 신발 제조, 농수산물, 자동차, 전자장비 및 부품과 같은 일부 업종은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수입시 혜택

베트남 기업은 EU에서 고품질의 상품과 원자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입 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생산성 및 상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EU의 첨단기술 설비를 수입 가능하다.

3

상품에 대한 신규 혜택 제도 추가

현재 베트남 관세 대상의 약 42%가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 ("GSP")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는데, EVFTA비해 대상이 적고 그 구조도 다르다. 또한, GSP는 일방향의 제도이며 EVFTA 발효 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국내 및 지역 공급망 개발 요건

EVFTA는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 원자재의 ROO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VFTA에 따른 관세 인센티브를 활용하기 위해 기업들은 국내 및 지역, 특히 유럽 및 베트남과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에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5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제도적 문제, 법률 정책, 기업 환경, 노동, 시설 등에 대한 약정은 더 투명하고 편리하고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적절한 방향으로 변화 및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딜로이트 베트남의 권고사항

실행해야할 5가지 핵심 사항

1

수출입 상품에 대한 적합한 HS 코드 확인

관세 감면 혜택은 상품의 HS코드에 따른다. 베트남에서 수출된 상품의 EVFTA에 따른 관세 감면 혜택 및 적용시점을 확정하기 위해 수출기업은 수출상품에 대해 EU 관세당국이 승인하는 HS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베트남으로 상품을 수입할 때는 베트남 관세당국이 승인할 HS코드를 확인하고 이를 공급자에 통보하여 C/O에 명시하도록 한다.

HS 코드를 기준으로 ROO 를 만족하는지 확인

수출자는 EVFTA하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관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 어떤 ROO가 충족될 수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많은 제조 상품들의 경우 복합적인 규정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섬유 및 의류 분야의 '원산지 상품'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제조/가공 과정이 수행되어야 하며,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비율도 일정비율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원자재 및 생산 비용에 대한 검토

수출 기업, 특히 여러 국가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상품을 생산한 기업은 생산 활동 및 부가가치가 ROO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EU 또는 EU 및 베트남과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아세안 국가 및 한국) 에서 원자재를 구매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베트남 원산지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출자는 지속적으로 ROO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싱 및 비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원산지 증명서를 관세 혜택 신청시 사용 가능

베트남 수출자는 EUR.1 C/O 양식 또는 상업 서류 상 자체 원산지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자체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사전에 베트남 해당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수출자는 ROO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베트남의 수입 업체는 EU 공급자로 부터 EUR.1 형식 또는 상업 서류로 원산지 증명서를 획득해야 한다.

5

EVFTA 우대 관세율에 따라 신청

수입업자는 관세신고서에 EVFTA에 따른 특별우대관세율을 명시하고 원산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관신고서, 원산지 증명서 또는 상업 서류상 정보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EVFTA를 적용받지 못 할 수도 있다. 수출기업은 EUR.1 양식에 따른 원산지 증명 또는 상업 서류 상원산지 자체 증명을 EU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제출 서류상 정보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딜로이트 베트남의 지원

베트남 딜로이트의 글로벌 무역 및 관세 전문가들은 EVFTA를 포함한 자유 무역 협정 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한 원산지 규정 및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풍부한 자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의 수출 및 수입업체들에게 실무 경험과 지원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Bob Fletcher
Director, Trade and Customs
+84 28 7101 4398
fletcherbob@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About Deloitte Asia Pacific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 2020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